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8. 30.(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8월 30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76
- 나. 발 의 자: 김성한 의원 외 8명
- 다. 발의일자: 2021년 8월 10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임산부, 임산부 탑승 자동차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8조)
- 마. 시행규칙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협조부서: 주차관리과

다.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 제정 목적과, ‘임산부’, ‘임산부 탑승 자동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용어 정의
 -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안 제4조)
 -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임산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 여성우선 주차구획¹⁾ 내에 설치 가능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4(여성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대상시설 규정(안 제5조)

- 강서구 본청 및 소속기관, 강서구의회, 공영주차장,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²⁾, 공동주택³⁾ 등에 설치 권고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안 제6조)

-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장 이용 금지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안 제7조)

-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 위반차량 조치(안 제8조)

- 임산부 전용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 하도록 할 수 있음

②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4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9.]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벌칙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 규정⁴⁾이 없어, 위반차량에 대해 이동 주차를 하게 하는 수준의 제도 조치임

다. 종합 의견

- 2020년 대한민국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우리나라 최초로 인구가 감소한 해로 기록되었고, 2019년도 기준 합계출산율⁵⁾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시행중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제공하는 것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4)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다만, 주차구역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별도 설치하고 임산부의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 주차구역 설정 시, 해당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임산부 이용빈도 및 추이, 여성근로자 현황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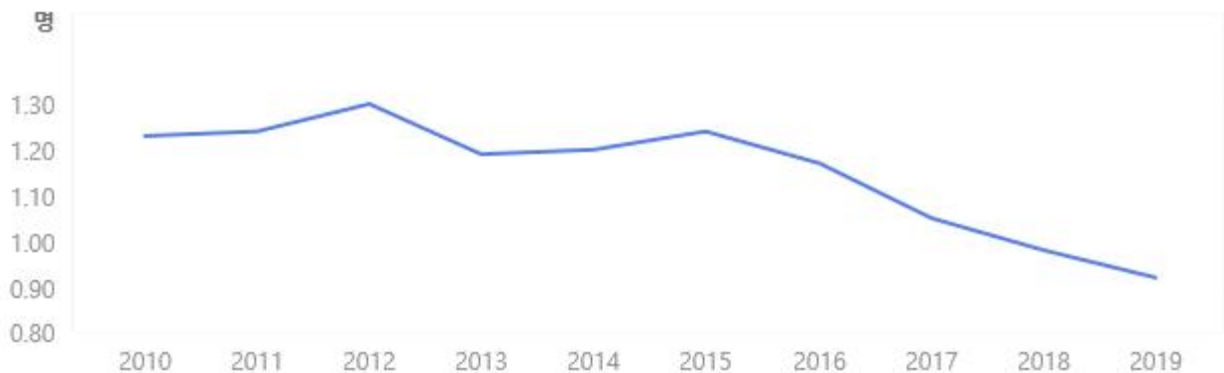
- 아울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합계출산율(통계청KOSIS, 2019년 기준)

시도 별	2019						
	합계출산율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0.918	7.1	35.7	86.2	45.0	7.0	0.2
서울특별시	0.717	3.0	17.7	68.2	45.5	7.5	0.2
부산광역시	0.827	5.2	28.8	79.3	42.5	6.6	0.2
대구광역시	0.932	5.7	37.1	91.3	43.0	5.8	0.1
인천광역시	0.940	8.5	36.2	87.0	46.3	7.1	0.2
광주광역시	0.913	7.1	37.3	85.7	42.2	6.6	0.1
대전광역시	0.883	7.0	36.7	82.0	42.0	6.1	0.1
울산광역시	1.084	7.9	48.6	107.0	43.6	6.2	0.2
세종특별자치시	1.472	11.6	73.1	139.8	60.6	9.5	0.4
경기도	0.943	6.7	36.5	89.3	46.2	7.2	0.2
강원도	1.082	11.0	54.7	96.6	43.1	6.7	0.3
충청북도	1.050	11.6	52.6	93.8	41.5	6.5	0.2
충청남도	1.112	13.7	58.6	97.4	42.0	6.9	0.2
전라북도	0.971	10.5	45.0	87.3	40.8	6.4	0.2
전라남도	1.234	12.0	58.9	111.9	51.3	7.8	0.2
경상북도	1.089	10.0	55.1	97.7	44.5	6.5	0.2
경상남도	1.046	8.4	49.3	98.6	42.7	6.2	0.2
제주특별자치도	1.145	11.9	50.0	98.3	53.6	10.6	0.3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0.918명** '19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참고2

관내 주차장별 전용주차구역 현황 (구청 소관)

연번	구분	주차장명	주차면수	전용주차구역 면수			
				여성구역	장애인	임산부	노인
1	노외주차장	화곡본-2 공영주차장	100	12	3	-	-
2		화곡2-1 공영주차장	59	14	2	-	-
3		화곡3-1 공영주차장	99	19	3	-	-
4		화곡4-1 공영주차장	138	28	7	-	-
5		화곡5-1 공영주차장	27	4	1	-	-
6		화곡5-2 공영주차장	25	5	1	-	-
7		화곡5-3 공영주차장	16	5	1	-	-
8		화곡7-1 공영주차장	86	20	3	-	-
9		등촌2-1 공영주차장	91	-	3	-	-
10		화곡6-1 공영주차장	298	59	9	-	-
11		벚골공원 공영주차장	231	53	7	4	-
12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공영주차장	248	49	9	-	-
13		가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500	102	23	4	-
14		화곡본-1 공영주차장	97	17	3	-	-
15		화곡1-1 공영주차장	98	11	3	-	-
16		화곡8-1 공영주차장	53	3	2	-	-
17		화곡8-2 공영주차장	110	11	4	-	-
18		서울식물원 제2 공영주차장	202	20	9	-	-
19		마곡7 임시 주차장	400	-	-	-	-
20		마곡8 임시 주차장	200	-	-	-	-
21	노상주차장	구암길	49	11	3	-	-
22		꿈나무길	62	11	3	-	-
23		달구지길	29	-	1	-	-
24		방죽길	52	22	5	-	-
25		배다리동길	331	30	5	-	-
26		배다리서길	256	25	10	-	-

연 번	구 분	주 차 장 명	주 차 면 수	전용주차구역 면수			
				여 성 구 역	장 애 인	임 산 부	노 인
27	노 상	신학대길	53	11	2	-	-
28		황금내공원길	71	11	2	-	-
29		공항2 임시주차장	80	-	-	-	-
30	구 청 구 의 회 보 건 소 등	강서구청 본관 청사 주차장	63	4	2	-	-
31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주차장	28				
32		구의회	48	7	4	-	-
33		보건소	18	1	1	-	-
34	주 민 센 터	염창동	8	-	1	-	-
35		등촌제1동	7	-	1	-	-
36		등촌제2동	5	-	-	-	-
37		등촌제3동	14	2	1	-	-
38		화곡본동	11	-	1	-	-
39		화곡제1동	10			-	-
40		화곡제2동	9	-	1	-	-
41		화곡제3동	10	-	1	-	-
42		화곡제4동	-	-	-	-	-
43		화곡제6동	1	-	-	-	-
44		화곡제8동	12	-	1	-	-
45		우장산동	16	-	1	-	-
46		우장산동 내발산동 문화센터	10	-	1	-	-
47		가양제1동	12	-	1	-	-
48		가양제2동	12	-	2	-	-
49		가양제3동	9	-	1	-	-
50		발산제1동	15	3	2	-	-
51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28	7	1	-	-
52		방화제1동	11	-	1	-	-
53		방화제2동	3	-	-	-	-
54		방화제3동	11				

※ 서울시장 소관의 시영주차장(10개소)은 제외함.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